

[붙임 6]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및 관련조항 단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안전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장 장용수